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 제도 중심으로 -

이성기* · 김학경**

〈요 약〉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③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제1저자)(법학박사)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경찰학박사)

의 요건을 차별화·세분화·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①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②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③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미국 민간경비,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 캘리포니아 주 민간경비규제법,
민간경비 자격요건,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

| 목 차 |
|-----------------------|
| I. 문제의 제기 |
| II. 미국의 민간경비 규제 일반현황 |
| III. 캘리포니아 州 민간경비규제제도 |
| IV. 결론 및 시사점 |

I. 문제의 제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3,651개, 경비원은 146,286명에 이르는 등 한국에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경찰청, 2012).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간경비산업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문화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이성기·김학경,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교육훈련 제도 등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건은 이러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에 민간경비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경비원의 권한남용 등 부작용을 통제할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의 경우 면허요건이 자본금 5천만원,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구비 정도로 비교적 느슨하며 경비원에게도 관련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가 난립하는데 체계적 직원 교육·훈련은 어렵고, 이에 경비계약을 할 때마다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경비원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연합뉴스, 2012). 최근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히 많이 수행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현실 문제점에 대한 학계의 선제적인 대응이라 여겨진다(<표1 참조>).

<표 1>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 연구자 (연도) | 내 용 (비교법적 고찰측면에서) | 특징 (비교법적 고찰측면에서) |
|----------------|--|--|
| 박동균 (2002) | - 미국 일리노 주 기계 및 무장 경비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소개 | |
| 임명순 (2003) | - 미국 일리노 주 경비관련 훈련프로그램 소개 | |
| 이상원(2006) | - 미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일반현황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사례 소개 | National Security Training Academy (2003) 및 National Security Academy (2004) 공식자료 인용 |
| 이창무 (2006) | - 공식홈페이지 및 외국문헌의 직접 인용을 통한 각 주별 민간경비업체 법적·행정적 규제현황 정리 & 이를 통한 미국 민간경비산업 규제전략의 특성 도출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of 2004) 소개 |
| 안황권 (2006) | - Cunningham <i>et al.</i> (1990) 및 Simonsen (1998) 직접 인용을 통한 미국 각 주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 중 제도 소개 & 미국 산업경비협회 민간자격증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소개 | 미국 9개 주의 민간경비 제도를 소개 |
| 공배완 (2007) | 미국 민간경비산업 기능별 분류 및 CPP 자격증 소개 | |
| 허경미·박영주 (2007) | - 미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소개 | |
| 김태민·박동균 (2008) | - 미국 민간경비산업 간략 언급 및 CPP 자격증 소개 |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일반적 소개 |
| 김원기·이효민 (2008) | 미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실태 소개 | |
| 박준석 (2008). | 펜실베이니아 주 민간조사원 제도 업무범위 소개 | 주로 미국 민간조사원 제도에 대한 소개 |

<표 1>에 나와 있는 민간경비 규제관련 선행연구들은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로써 비교법적 고찰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산업화가 최초로 이루어졌고 또한 전 세계 민간경비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함으로써 거시적인 비교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개개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비교법적 고찰에 있어서 이차적인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할 때 종종 자료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때 해당국가에서 출판된 최근의 공식적인 보고서나 학술자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문헌자료만을 재인

용한다면 사실 전달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국 민간경비산업제도의 전반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연방과 특정 주의 구체적인 경비업법을 분석하고, 특히 공식적인 보고서 및 문헌, 홈페이지 등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면허 및 등록조건, 관리기관, 교육프로그램, 기타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또 다른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현재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of 2007: 이하 PSOEEA)이 통과되어 민간경비원의 범죄경력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본격적인 규제의 시작을 의미하나, 아직까지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연방차원의 통일된 민간경비 규제법률이 없이 각 주별로 다양한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선행연구 중 이창무(2006)의 연구가 유일하게 미국의 각 주별 민간경비업체 법적·행정적 규제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서 미국의 민간경비산업 규제전략의 특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PSOEEA의 내용 및 미국 민간경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단위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PSOEEA(2004년 입법된 PSOEEA가 2007년 개정됨)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미국 50개 주중 비교연구의 등가성(Equivalence)이 인정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선택하여 현행 민간경비업법의 구체적 규정, 미국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와 문헌, 해당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주의 민간경비 규제제도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미국의 민간경비 규제 일반현황

1. 연방차원의 규제: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

1) 제정배경

1991년 이후 미국 의회는 민간경비원의 자격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상정해 왔으나 법안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당시 그 법안들의 공통점은 비록 그

규제방식은 각각 달랐지만 대부분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통한 경비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Fischer *et al.*, 2008). 이 중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Al Gore 의원과 상원대표였던 Don Sundquist가 제출한 법안은 민간경비원의 전과확인을 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비원이 미국시민권이 있어야 하며, 추천, 심리테스트, 마약, 체력 검사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몇몇의 법안은 의무적인 훈련시간을 규정하는 법안도 있었지만 해당 법안은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주로 이익집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경찰협의회(the Fraternal Order of Police) 측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자격이 향상될 경우 경찰관 출신의 민간경비원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반대하였고, 민간경비 업체들이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직접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McGinley, 2007).

이렇게 민간경비원에 대한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의 안보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미국의 주요 국가시설을 경비하는 민간경비원의 자격을 검증할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 레빈(Levin) 상원 의원이 민간경비고용인가법(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이하 PSOEAA)을 다시 제안하게 되었다. PSOEAA에 대한 공청회가 2004년 3월 열렸고, 이 법안은 국가정보개혁법(the National Intelligence Reform Act)의 개정과 함께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2004년 12월 17일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의 부속법령으로 최종 승인되어 공포되기 이르렀다(Purpura, 2011). 이렇게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내용은 주로 경비원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한정되어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조항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PSOEAA의 내용

(1) 민간경비원의 전과조회에 대한 규정

우선 이 법에 의해 경비원의 신원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비업주는 미국 법무부장관(the Attorney General)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은 민간경비원의 고용주는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그 사람의 지문을 채취(전자지문

도 가능)하여 주의 신원식별국(the State Identification Bureau, 이하 SIB)에 보내고, SIB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단위의 전과기록을 조회한다. 다만, 모든 주가 SIB에 가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민간경비업체가 SIB에 가입하지 않은 주에서는 SIB에 가입한 주의 면허를 받아 전과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SIB에서 전과사실이 확인되면 SIB는 FBI의 국가신원색인(Interstate Identific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에서 전과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만일 대상자가 주 단위에서의 전과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SIB는 해당 지문을 통합자동지문식별시스템(the Integrated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IAFIS)을 통해 FBI에 보내고 FBI에서는 형사사법정보국(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내의 지문인식기록시스템(the Fingerprint Identification Record System, FIRS)의 기록을 확인하여 주의 해당 기관(SIB)에게 전과사실을 통보한다.

위 전과사실 조회를 받은 주의 해당 기관은, 만약 해당 주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중죄(Felony: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선고받았거나, 2) 부정직함(Dishonesty) 또는 허위의 진술(False Statement)을 수반하는 범죄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경우, 3) 과거 10년 이내에 범해진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 또는 4) 과거 365일 이내에 중죄로 기소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주내에서 민간경비원 자격에 대한 법규가 있다면 FBI로부터 통보받은 전과사실자료를 해당 주의 민간경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만 통보해야한다. 면허를 받은 민간경비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에 대한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전과사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또한 FBI의 해당 부서장은 전과사실조회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PSOEAA에 근거한 연방규칙(Federal Regulations)

PSOEAA는 법 제정 이후 18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PSOEAA의 전과사실조회 절차를 위한 연방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비업자는 FBI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전과사실을 요청하는 주에 전과조회 목적의 오로지 경비원의 자격확인을 위한 것이며, 허위인 경

우 위증의 죄를 받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Department of Justice, 2006). 또한 경비원 지원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전과사실을 조회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오로지 경비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과사실 확인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FBI와 주의 3년 주기 감사에 대비하여 동의서를 최소 3년 이상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PSOEEA 규정에는 10년 이내의 범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65일 이내의 범죄에 관한 기산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기산점을 연방규칙에서는 지문을 채취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전과기록 때문에 민간경비원 자격에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FBI에 수수료를 내고 자신의 지문을 제출하여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록을 SIB나 지정된 주의 기관에서 보관중이면 주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3) PSOEEA의 기능과 한계

PSOEAA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과기록이 있는 민간경비원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FBI 자료에 따르면 약 12 퍼센트의 전과자가 이 법에 의한 Background Check에 의해 전과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 법의 시행 전부터 민간경비원에 대해 전과사실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3년에 FBI로부터 전과경력력을 통보받아 민간경비원으로 지원한 69,000명 중 9,000명이 전과사실이 확인되어 경비원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McGinely, 2007). 그러나 PSOEEA 제정 이전에도 각 주에서는 다른 법령(Public Law 92-544)에 의해 FBI로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었다. 예컨대, PSOEEA의 제정 이전에도 약 34개 주에서 Public Law 92-544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PSOEEA의 가입 여부는 각 주의 선택에 달려 있어 민간경비원에 대한 연방법으로서의 강력한 규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 차원의 규제

이창무(2006)의 연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 주들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면허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한 보험가입 및 교육훈련 등의 비교적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오리건·와이오밍·사우스다코타 같이 북서부에 위치하여 면적은 넓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주들은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민간경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엄격한 면허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비교연구에서는 등가성(Equivalence)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바, 가치가 서로 같아야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등가성이 없다면 연구자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김구, 2011). 따라서 비교 등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 주 위주로 경비업체(Private Security Company), 관리자(Security Manager), 그리고 경비원(Security Officer)의 면허 및 자격요건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경비업체 및 관리자(Private Security Company and Security Manager) 면허 및 자격요건 현황

인구밀도가 높은 10개 주의 경비업체 면허 또는 등록 및 경비업체 관리자의 면허 취득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를 보면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하고는 계약경비업체(Contract Security)는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그러나 전속경비업체(Proprietary Security)의 경우에는 조지아주만 면허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때 전속경비업은 자신을 위해 풀타임 경비원 또는 업체를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경비업은 다른 회사나 업체를 위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3년(플로리다와 일리노이)까지이다. 관리자의 면허 요건을 보면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가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개 주(일리노이, 미시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학사 또는 2년제 학위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개의 주(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는 제외)에서 경비업체 관리자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경비업체 관리자가 되기 위한 최소 연령으로는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를 제외한 모든 주가 18세에서 2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2> 인구밀도가 높은 10개주 경비업체 및 관리자 면허 및 자격요건

| 주 (state) | 면허 /등록요건 (계약경비) | 면허 /등록요건 (전속경비) | 면허 유효 기간 (년) | 최소 보험 요건 | 최소경력 요건(관리자) (년) | 면허 시험 (관리자) | 최소 연령 (관리자) | 전과 확인 |
|-----------|-----------------|-----------------|--------------|----------|------------------|-------------|-------------|-------|
| 캘리포니아 | ○ | | 2 | ○ | 1 | ○ | 18 | ○ |
| 텍사스 | ○ | | 1 | ○ | 3 | ○ | 21 | ○ |

| | | | | | | | | |
|--------|---|--------------------------------------|---|---|----------------------------------|----------------------------|----|---|
| 뉴욕 | ○ | 보험가입 증명서만 제출 | 2 | ○ | 2 | ○ | 25 | ○ |
| 플로리다 | ○ | | 3 | | 2 | ○ (면허 경비원 2년 경력은 예외) | 18 | ○ |
| 일리노이 | ○ | 등록 (5명이상 무장경비원 고용업체 무장경비 금융기관) | 3 | ○ | 1(학사) 2(2년 3(기타) | ○ | 21 | ○ |
| 펜실베이니아 | | | | | | | | |
| 오하이오 | ○ | | 1 | ○ | 2 | ○ | | ○ |
| 미시건 | ○ | | 2 | ○ | 2 또는 4년 및 경찰행정학사 또는 산업경비학사 | | 25 | ○ |
| 조지아 | ○ | ○ | 2 | ○ | 2년 또는 4년 및 형사정책 등 관련분야 학사 | ○ | 18 | ○ |
| 노스다코타 | ○ | | 2 | ○ | 3 | | 18 | ○ |

※ 자료: Strom *et al.*, 2010, p. 6-5

2) 경비원(Security Officers) 면허 및 자격요건 현황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10개 주 중에서 7개 주가 계약경비업체의 경비원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해야 하며 2개 주(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는 계약경비업체 중 무장경비원인 경우에만 면허를 요구하고 있고 1개 주(미시건)만 분기별로 경비원의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5개 주에서 전속경비업체의 경비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장을 하는 경우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훈련요건으로는 7개 주가 최소 훈련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9개 주가 무장경비원에 대한 최소훈련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훈련시간은 최소 16시간(노스다코타)에서 최장 40시간(캘리포니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유효기간은 1년(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최장 3년(일리노이)까지이다. 미시건과 오하이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비원의 최소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 주(일리노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무장경비원인 경우 21세 이상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표 3> 인구밀도가 높은 10개 주 경비원 면허 및 자격요건

| 주 (state) | 면허 /등록요건 (계약경비) | 면허 /등록요건 (전속경비) | 무기 소지면허 | 면허 유효기간 | 무기소지 유효기간 | 초기 훈련 시간 요건 | 무기 훈련 | 최소 연령 | 전과 확인 |
|--------------|-----------------------|-----------------------|------------|------------|--------------|----------------------|----------|----------|----------|
| 캘리포니아 | ○ | ○ | ○ | 2 | 2 | 40 | 14 | 18 | ○ |

| | | | | | | | | | |
|--------|--------------------------|-------------------------|---|---|---|----|-------|-------------------|---|
| 텍사스 | ○ | | ○ | 2 | 2 | 30 | 10-15 | 18 | ○ |
| 뉴욕 | ○ | ○ | ○ | 2 | 2 | 24 | 47 | 18 | ○ |
| 플로리다 | ○ | 무장경비원 해당 | ○ | 2 | 7 | 40 | 28 | 18 | ○ |
| 일리노이 | ○ | 무장경비원 해당 | ○ | 3 | 1 | 20 | 40 | 18(비무장) 21(무장) | ○ |
| 펜실베이니아 | 무장경비원 | 무장경비원 해당 | ○ | | 5 | | 40 | 18 | ○ |
| 오하이오 | ○ | | ○ | 1 | 1 | | 20 | | ○ |
| 미시건 | 계약경비업체-분기별 명부 제출 | | | | | | | | |
| 조지아 | 무장경비원-비무장은 훈련요건(등록불요) | 무장경비-비무장은 훈련요건(등록불요) | ○ | 2 | 2 | 24 | 15 | 18(비무장) 21(무장) | ○ |
| 노스다코타 | ○ | 무장경비원 해당 | ○ | 1 | 1 | 16 | 20 | 18(비무장) 21(무장) | ○ |

※ 자료: Strom *et al.*, 2010, p. 6-4

지금까지 미국 민간경비 연방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PSOEAA의 제정배경 및 전과조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미국 주 단위에서 민간경비규제 일반적 현황, 특히 경비업체(Private Security Company)·경비관리자(Security Manager)·경비원(Security Officer)의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았다.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가 많은 주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곳은 캘리포니아이며, 특히 용역폭력사태 등으로 민간경비 질적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하며 바로 캘리포니아가 비교연구의 등가성(Equivalence)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민간경비 규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민간 경비원의 선발제도와 교육훈련, 면허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Ⅲ. 캘리포니아 州 민간경비규제제도

1. 개 관

캘리포니아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담당기관은 경찰기관이 아닌 주의 소비자서비스청(the State and Consumer Services Agency) 산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이다. 민간경비에 관한

자격부여 및 등록 등 제반 업무는 소비자업무국장(the Director of Consumer Affairs)의 책임과 권한에 속한다. 또한 구체적 실무업무는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이하 BSIS)에서 담당한다(BSIS, 2012a).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법은 캘리포니아 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인데, Chapter 11.3에서 민간조사업(Private Investigators), Chapter 11.4에서 전속경비업(Proprietary Services), Chapter 11. 5에서 민간경비서비스(Private Security Service), Chapter 11. 6에서 경보회사(Alarm Company)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위 업무 중 민간조사업은 비교연구의 등가성이 없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을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연구의 등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3개 업종에 관한 법과 규정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의 면허 요건과 경비원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전속민간경비업(Proprietary Private Security Service)

1) 전속민간경비원(Proprietary Private Security Officer)의 정의

전속민간경비원은 무장을 하지 않은 경비원(Unarmed Individual)으로서, 특정 고용주에게 w전속적으로 고용되어 그 고용주에게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7574.01). 한편, 전속민간경비원고용자(Proprietary Private Security Employer, PPSE)는 개인, 회사 등으로서 1명 이상의 전속 민간경비원을 오직 자신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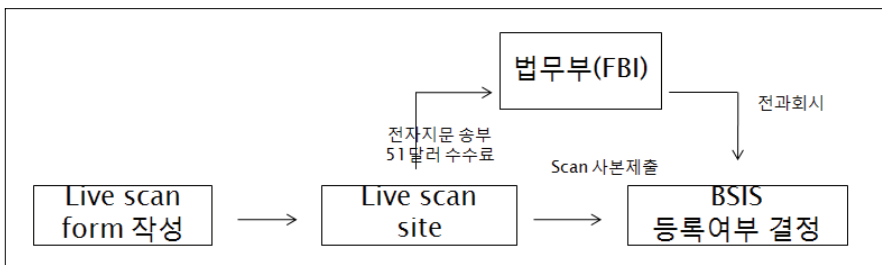
- 경비원임을 확실히 나타내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경비원의 업무가 불특정 대중과 관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전속민간경비원의 자격, 전과조회 및 주정부 등록절차

경비원으로 고용되기 전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업무국(DCA)에 등록을 하면 죽고 자격증을 위한 시험과 같은 절차는 없다(§7574.10). 자격요건으로 전속 민간경비원으로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FBI의 전과조회를 받아야 한다. 전과조회 절차는 우선 주 DCA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양식과 더불어 해당자의 범죄 경력,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체포사실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십지문 또한 제출해야 한다. 양식과 함께 지문을 받은 주의 DCA는 미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고 미국 법무부는 이를 FBI에 통보한다. FBI에서 범죄경력에 대한 사실을 통보 받은 미국 법무부는 이를 확인한 뒤, 주의 소비자보호국으로 보낸다.

신청자가 지문정보를 제출하는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자는 주 DCA에서 제공하는 Live Scan Form 3부를 작성한 뒤 인근에 있는 Live Scan Site에 가서 지문을 스캔한 뒤 전산으로 미국 법무국과 FBI에 보낸다(BSIS, 2012b). 이때 법무부(32달러)와 FBI(19달러)에 합계 51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Live Scan Site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와 같이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민간경비업자의 전과조화를 위해 지문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지문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BSIS, 2012c). 지문정보를 제출한 후에는 등록을 위한 신청서와 신청수수료, 지문정보제출을 위해 작성했던 Live Scan Form사본을 BSIS로 우편으로 제출한다. 등록신청서와 전과조화를 받아 확인한 BSIS는 등록이 승인되면(Approved) BSIS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BSIS, 2012d). 보통 등록절차는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배치된 전속민간경비원은 등록증을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7574.22). 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DCA에 갱신하여야 한다(§7574.11).



〈그림 1〉 캘리포니아 전자지문 송부 및 전과회시 흐름도

3) 등록의 거부(Denial of Registration)

DCA 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절차위반을 이유로 전속민간경비원 또는 경비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등록거부를 당하였거나 등록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 또는 등록의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전속민간경비원의 경우 전과조회 결과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정직하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거나 남을 해한 경우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범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경비원의 구체적 임무를 감안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7574.15(c), Section 480).

4) 전속민간경비원의 업무

전술한 바와 같이 전속민간경비원은 계약기간 동안 오직 해당 고용주에게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다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계약을 맺은 고용주에게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속민간경비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살상용 무기(Deadly Weapon)를 소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루분사액을 소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BSIS에서 인가한 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5) 전속민간경비원의 교육 및 훈련

(1) 훈련시간 및 과목

전속민간경비원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또는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16시간의 코스 훈련을 이수해야한다(§7575.18). 또한 매년 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7574.5). 교육의 시간과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세부적인 항목은 BSIS가 기준을 정한다(§7574.18). 현재 규정된 16시간의 코스훈련은 2시간의 체포권한(Power to Arrest), 2시간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감지(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errorism Awareness) 교육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12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보수교육은 고용주의 판단으로 경비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비관련 과목 중 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BSIS 홈페이지에 규정된 Training Syllabus Proprietary Private Security Officers의 세부적인 훈련과목 및 시간은 아래 <표 4>와 같다(BSIS, 2012e).

〈표 4〉 전속경비원의 필수교육훈련 내용

| 교과목 | 세부교육사항 | 시간 |
|--|---|-----|
| Section I. 체포권한 교육(Power to Arrest) 총 4시간 | | |
| 체포 및 구금의 개관 및 기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포 및 구금 권한에 대한 개관 2. 구금의 정의 3. 체포의 정의 4. 사인의 체포란 무엇인가 5. 물리력의 사용 6. 압수와 수색 7. 개인과 공공재산의 개념 | 2시간 |
| 경비전문가를 위한 테러감지 및 대량살상무기 훈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련 개요 2. 경비원의 임무 3. 테러의 본질 4. 대량살상무기 5. 비판적 정보(critical information)의 처리와 공유 | 2시간 |
| Section II. 경비업 관련 과목 총 12시간 | | |
| 경비원의 임무와 책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속(proprietary)의 개념 2. 개관 | |
| 대중 및 고용주의 기대 (Public and Employer Expectation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윤리 2.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 3. 업무수행(job conduct) 4. 문화에 대한 이해(cultural awareness) 5. 성추행(sexual harassment) | |
| 책임문제(liability issue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 형사, 및 불법행위 책임 개관 2. 경비 및 조사서비스 관련법과 규칙 3. 임무에 대한 설명 4. 과실에 대한 설명 5. 공동책임에 대한 설명 6. 정확한 보고 및 문서작성 | |
|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인간 의사소통기술 2. 상황 판단(situational awareness) 3. 분쟁관리(managing disputes) 4. 상황의 분산 및 감소(diffusing and de-escalation situations) 5. 폭력상황에 대처하는 방법(Reacting to Violent Incidents) | |
|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동에 관련된 비상상황 2. 사람에 관련된 비상상황 3. 비상상황에 따른 대중의 기대 4. 비상대책에 대한 설명 5. 비상대피에 대한 설명 | |

(2) 훈련기관: 고용주 또는 전문교육기관

전속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고용주(Proprietary Private Security Employer, PPSE)의 책임 하에 소속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BSIS는 전속민간경비업자, 특정 (교육)기관 또는 학교가 해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7574.18). 전속민간경비업자가 16시간의 교육과 2시간의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BSIS의 책임자에게 심사를 위한 편지와 이력서를 보내고 책임자가 전화로 인터뷰를 한 후 인가를 결정하는데, 인가를 할 경우 훈련 매뉴얼을 보내준다. 훈련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보통 10-14일정도 소요된다(BSIS, 2012f). 경비업자가 교육을 실시하면 감사를 위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7574.18).

6) 등록의 취소 등(§7574.30)

소비자업무국(DCA) 국장(director)은 전속민간경비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행한 범죄가 경비원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격, 기능, 임무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7574.31). 등록의 정지, 취소, 거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주지사가 임명하는 민간경비징계심사위원회(Private Security Disciplinary Committee)에 서면으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지받게 되어 있다(§7574.33). 또한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민간경비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3. 민간경비서비스(Private Security Service)

1) 민간경비서비스의 정의 및 활동 범위(§7582.1)

민간경비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건물 또는 지역 내의 물품의 도난·분실·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경비원의 순찰·건물경비·도난과 관련된 조사업무 등을 포함하며, (무장 및 비무장 경비원을 포함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민간순찰업자(Private Patrol Operator)라고 한다(Code § 7582.1). 또한 민간순

촬영업자에 고용되어 건물 내의 순찰·경비 등을 담당하는 자를 경비원(Security Guard 또는 Security Officer)이라고 하며, 이 경비원은 전속민간경비원과 달리 특정 경비업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관할 당국에 등록한 뒤 여러 군데 소속되어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경비업(Contract Security)에 속한다. 또한 이러한 경비원들 중 공공장소 또는 길거리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순찰을 담당하는 경비원을 거리순찰경비원(Street Patrol-Person)으로 분류한다. 한편, 이러한 경비원들과 달리 민간순찰영업 업무 중에는 고속도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장차량을 운행하는 무장차량경비원(Armored Vehicle Guard) 및 이들을 고용하는 무장계약업자(Armored Contract Carrier)들이 포함되고 이들의 총기사용 교육에 필요한 총기 및 경찰봉 훈련설비(the firearms and Baton Training Facility)에 대한 규정을 총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무장경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총기 및 경찰봉에 대한 규정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분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민간순찰영업자의 영업요건, 경비원(Security Guard)의 자격요건 및 훈련과목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경비원(Security Guard)의 자격 요건

민간순찰영업업자에게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BSIS에 등록하여 한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전과조회의 요건은 위 민간순찰영업업자와 동일하다(§7583.9). 경비원 또는 순찰요원(Patrol Person)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자인 민간순찰영업업자 또는 인가된 업체로부터 40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7583.6(b)). 민간순찰영업업자로 등록하는 자 또는 관리자(manager)의 경우 18세 이상, 전과조회 이외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경비원의 경우 기본 교육을 이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이 영업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계별 교육요건은 아래와 같다(§7583.6) (BSIS, 2012g).

3) 교육훈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비원은 우선 근무배치 전 8시간 동안 체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근무배치를 할 수 없다(§7583.8). 이후 최초 등록 후 30일 이내 16시간, 최초 6개월 이내 16시간 등 모두 32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 합계 40시간의 경비원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05년부터는 1년에 8시간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7573.6(f)). 교육주체는 민간순찰영업자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자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구체적 과목은 아래와 같다.

〈표 5〉 40시간 경비원(Security Guard) 훈련 요건

| 훈련 이수 일 | 훈련 소요시간 |
|------------------------------------|---------|
| 근무 배치 전 (power to arrest) | 8시간 |
| 최초 30일 이내(security officer skills) | 16시간 |
| 최초 6개월 이내(security officer skills) | 16시간 |
| 합계시간 | 40시간 |

(1) 체포에 관한 교육(Power to Arrest)

우선 8시간 진행되는 체포에 관한 교육은 다음의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7583.7).

〈표 6〉 체포교육(8시간)의 세부 교육내용

| | |
|-------------------------------|--------------------------------|
| 가) 체포에 관한 책임과 윤리 | 사) 고용주의 책임(Employer liability) |
| 나) 체포에서 경찰관과 경비원과의 관계 | 아) 무단침입에 관한 법(Trespass law) |
| 다) 경비원의 체포상 법률적 한계 | 자) 윤리와 의사소통 |
| 라) 압수와 수색의 제한 | 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구급상황포함) |
| 마) 형사적, 민사적 책임 | 카) 경비원의 안전 |
| 바)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 | 타) 기타 필요한 과목 |

(2) 필수교육(16시간)

〈표 7〉 경비원 필수교육(16시간)

| 교과목 | 세부교육사항 | 시간 |
|----------------------|---|-----|
| Public Relations(P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해 · 존중(Respect): 고정관념화(Stereotyping) · 화법(Verbal skill)/위기대응(Crisis intervention) · 다양성에 대한 이해 · 약물남용(Substance abuse)과 정신병 · 윤리와 전문가적 책임 | 4시간 |
| 관찰과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 관찰과 순찰기법 | 4시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질문하기 · 용의자와 의심스러운 행위 관찰 | |
| 의사소통과 중요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상 통신규약(누구를, 언제 연락할 것인가) · 무전기/ 모니터 · 기타 기술 2. 외부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초기대응자(초동조치자) · 의료 처치자 · 경찰, 보안관, 기타 법집행관 · 시 및 기타 정부 서비스 | 4시간 |
| 책임(Liability)/법적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계약자/ 고용자 · 민, 형, 행정적 책임 · BSIS 코드 및 규칙 · 경비원의 임무 | 4시간 |

(3) 선택 교육(16시간)

〈표 8〉 선택교육 과목

| 교과목 | 주요 교육사항 | 시간 |
|----------------------|--------------------------|--------|
| 일과 후 명령 및 과제 | 장비 및 구체적 장소에 따른 훈련 | 최대 4시간 |
| 고용주 정책 및 추진방향 | 고용자 보고서, 유니폼, 기타 내부적 정책 | “ |
| 비상대피 절차 | 계단, 엘리베이터, 문 등과 관련된 비상대피 | 최대 2시간 |
| 경비원 안전 | 협박에 대한 판단, 안전에 대한 인식 등 | 최대 4시간 |
| 체포, 압수 및 수색(고급) | 관계법령 및 필요 물리력 한계 등 | “ |
|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신분확인, CCTV, 기타 장비 운용법 | 최대 2시간 |
| 무단침입 | 개인 소유지, 빌딩, 재산 등에 대한 개념 | 최대 4시간 |
| 법령 및 규칙에 대한 이해 | 법령이해 | 최대 2시간 |
| 응급처치 | 미국 적십자 코스, 미국 심장협회 코스 등 | 최대 4시간 |
| 다루기 힘든 사람 대응요령 | 대화법, 갈등관리, 건설적인 스피킹 | “ |
| 직장폭력 | 이상행동포착, 위협신호(동료, 고용자 등) | “ |
| 화학요원 | 최루가스 사용법 등 | “ |
| 사고현장 보존 | 증거식별, 증거 보관 등 | “ |
| 군중통제 | 갈등 해결, 건설적 갈등관리 등 | “ |
| 안전운전 | 차량, 골프카트 등 | “ |
| 감독 | 임무와 책임, 법적 책임 등 | “ |
| 법정 행동 | 법정에서의 행동요령 | “ |
| 주차 및 교통관리 | 주차 및 교통관리 | 최대 2시간 |
| 무전사용 및 절차 | 무전절차 | “ |

| | | |
|----------------|---------------------|--------|
| 무기훈련 | 무기훈련 | 최대 8시간 |
| 경찰병 사용훈련 | 경찰병에 대한 훈련 | 최대 4시간 |
| 학교 경비훈련 | 학교 경비원에 대한 훈련 | 최대 8시간 |
| 요인에 대한 보호 | 요인에 대한 보호 | 최대 4시간 |
| 무기 재 면허에 대한 교육 | 매년 무기 재 면허를 위한 교육 | “ |
| 화재안전교육 | 화재안전 | “ |
| 테이저 등 전자총격기 교육 | 테이저 등에 대한 사용 및 안전교육 | “ |

4) 경비원의 범죄행위 및 등록의 자동정지

경비원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가 해당 경비업무와 기능, 책임, 임무 면에서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경우 경비원의 등록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데 이는 DCA Director가 유죄판결사실과 정지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7583.21). 또한 이 사실은 민간순찰운영자에게도 통지되어 그 시간부터 모든 고용 관계를 정지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 (§7583.21). 그러나 경비원이 이에 대해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민간경비징계심사위원회에서 열리게 된다.

4. 경보회사(Alarm Company)

1) 경보서비스의 정의

캘리포니아에서의 경보서비스는 경비장치를 팔거나 고객의 특정 건물 또는 장소에 설치하고 기계가 침입자, 위험 등을 감지하면 경비요원이 출동하거나 인근 지역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는 경비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로 보면 기계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Business and Professional Code §7590 이하 경보회사법(Alarm Company Act)에서는 경보회사운영자(Alarm Company Operator)에게 고용되어 경보시스템의 판매, 설치, 보수, 교체, 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출동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모두 경보요원(Alarm Agent)이라고 정의한다 (§7590.1). 경보회사운영자는 경보요원을 고용하여 경보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보회사운영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람의 상해·절도·횡령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7590.2). 경보요원이든 경보회사운영자이든 모두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7590.5). 회사가 경보운영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보관리사(Alarm Qualified Manager, 이하 AQO)가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 경보요원(Alarm Agent)의 자격 및 훈련요건

(1) 경보요원의 등록 및 자격

경보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근무배치 3일 이내 즉 72시간 이내에 BSIS에 등록해야한다(§7598.4). 다만, 72시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다. 경비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시에는 다른 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전과조회를 거쳐야 한다. 전과기록을 회신 받은 BSIS는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여부를 결정한 뒤 통보한다(§7598.9). 또한 등록신청서에 중죄, 교통범죄금을 제외한 경미범죄로 처벌받은 여부를 기재해야한다(§7598.6). 등록을 신청한 후 120일 동안은 임시 등록증으로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상에 범죄로 유죄판결 경력이 있다고 기재된 경우 임시등록증을 발부하지 않으므로 정식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없다(§7598.7). 또한 후술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교육훈련 후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DCA 국장이 판단하기에 경보요원의 계속된 임용이 공중의 안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정지시킬 수 있고, 조치를 받은 경보요원은 경보회사징계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7598.12).

(2) 교육훈련요건

경보회사에 고용되어 경보시스템에 반응하여 출동하는 모든 경비원은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 체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7598.1). 다른 종류의 민간경비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받은 고용자 또는 BSIS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업체에서 교육을 주관할 수 있다. 체포교육훈련코스의 시간은 8시간이며 과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7598.2) (BSIS, 2012h). 추가 교육은 선택사항이나 BSIS가 권고할 수 있다.

〈표 9〉 경보요원의 체포교육 과목

-
- 시민 체포에 있어서의 책임과 윤리
 - 체포에 있어서 일반경찰과의 관계
 - 민간경비원 체포의 한계
 - 압수, 수색에서의 제한
 - 대테러
 - 민·형사적 책임(개인 및 고용주의 책임)
-

I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미국 민간경비 규제제도 관련, ①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② 주차원의 민간경비 규제 일반현황, ③ (우리와의 비교 등가성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PSOEAA에 따르면, 각 주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간경비지원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경비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과조회를 거쳐야 하고, 경비원과 같이 전과관계 및 부정직(dishonesty), 사기 등에 의한 경력으로 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가급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민간경비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고려 조치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고, 역으로 전과기록 때문에 민간경비원 자격에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 자기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이 실효되거나 또는 경비업법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 이상이 지나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련 규정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 경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범죄내용이 재산범죄였는지 폭력범죄였는지 성범죄였는지 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일반경비원이 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내용에 관계없이 누구나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규정에서 우리와 미국연방 규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전과조회를 위한 설명한 법규정 외에 연방차원의 특별한 규제는 없었고, 면허 및 자격요건은 모두 주 정부의 규제에 따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민간경비의 모든 분야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에 업무과다·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후 대응적인 관리·감독만 가능한 상황이다(김원기·이효민, 2008; 이성기·김학경, 2012). 급격한 양적 성장세에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질적 전문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세심한 자격검증 및 교육훈련체계가 필요하고, 따라서 경찰청 내 또는 행정안전부 내 별도의 민간경비 전문담당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인구밀도 및 강력한 규제제도라는 비교 등가성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바,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③ 정보서비스(우리의 기계경비와 유사)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표 10>과 같이 차별화·세분화·단계화하고 있었다.

<표 10> 캘리포니아 경비회사 종류별 자격 및 등록요건 및 요약·비교

| 임무·요건·교육 등 | | 전속민간경비업 (Proprietary Private Security) | 민간경비서비스 (Private Security Service) | 경보회사 (Alarm Company) |
|------------|------|---|--|--|
| 경비원 임무 | | · 비무장 전속 경비원(고용을 맺은 전속 고용주에게만 경비서비스 제공) · 불특정 대중과 관계된 업무 | 특정 건물 또는 지역 내 물품 및 재산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무장·비무장 경비원의 순찰, 경비(비전속 경비원) | 경비장치를 팔거나 설치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경비요원을 출동시키거나 인근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경비서비스 |
| 등록 및 면허 | 경비업자 | 등록(2년간 유효) | 자격증(2년 유효) | 자격증(2년 유효) |
| | 경비원 | 등록(2년간 유효) | 등록(2년간 유효) | 등록(2년간 유효) (고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
| 자격 | 경비 | 18세 이상+16시간 기본교육 | 18세 이상+1년 이상 실무경험 | 18세 이상+전과조회(ACO) |

| | | | | |
|------------------|---|--|--|-------------------------------------|
| 요건 | 업자 | | +전과조회+필기시험통과 | 18세 이상+전과조회+2년 이상 유급경력+필기시험(ACQ) |
| | 경비원 | 18세 이상 +전과조회 | 18세 이상 +전과조회 + 40시간 기본교육 | 18세 이상+전과조회+ 8시간 기본교육(필기시험) |
| 경비원 교육훈련 | 16시간(등록 후 6개월 이내) +2시간 연차 보수교육 | 40시간 기본교육 근무배치 전: 8시간(필수) 최초 30일 이내: 16시간 최초 6개월 이내: 16시간 +8시간 연차 보수교육 | 근무지 배치 전 8시간 기본교육 | |
| 훈련기관 | 고용주 또는 인가학교 | 좌동 | 좌동 | |
| 경비원 등록취소 사유 | 경비원이 경비원의 임무와 상 당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저지 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 경비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 당 경비업무와 기능, 책임, 임무 면에서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 우 등록 및 고용의 자동 정지 | 계속된 임용이 공중의 안전에 해 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관계 정지 가능, 기타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사유 | |
| 자격증 또는 등록거부사유 | 등록절차위반, 과거 등록거부 또는 정지사유, 전과조회 결과 유죄판결 또는 부정직한 행위 가 상당한 정도로 경비임무에 관계된 경우 | 좌동 | 좌동 | |
| 비고 | | 민간순찰영업자가 무장경비원 을 고용하는 경우 500,000 달러 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 의무 | 지사 등록 시 120일 동안 경보 회사관리자(ACQ)의 지도 및 감 독 필요 |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 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며, 일반경비원의 교육은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의 교육(입교식·평가·수료식), 총 28시간으로 실제교육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다.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이론교육 18시간, 실무교육 69시간, 기타 4시간(입교식·평가·수료식)으로 실제 교육시간은 84시간에 달하는데, 무기를 소지·사용하는 특수경비원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의 사례에 비추어) 법적인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표 8참조>). 예컨대, 신변경호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원의 경우 신변경호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면, 업무와 교육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특수경비원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민간경비원의 교육시간 보다 양적으로는 월등히 많지만,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배치 전, 배치 후 단계별 세분화하여 신입교육이 일선 배치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표 5 참조>). 이를 통하여 교육과 실무의 경험이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종의 “직장 내 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민간경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개선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민간경비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세계 민간경비 시장에서 한국 민간경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에 대한 규명은 필수적이고,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 연방의 민간경비규제법(PSOEAA)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제도를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연방과 캘리포니아 주의 경비업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비업법상의 여러 규정과의 구체적 비교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인식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련한 좀 더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공배완 (2007). 한국경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민간경비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 11-36면.
- 김구 (2011).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서울: 비앤엠북스
- 김원기·이효민 (2008). 민간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호, 29-57면.
- 김태민·박동균 (2008).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1호, 137-167면.
- 김태환·박옥철 (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9호, 69-98면.
- 박동균 (2002).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호, 131-156면.
- 박준석 (2008). 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173-198면.
- 박병식 (1996). **민간경비론**, 서울:법륜출판사.
- 안황권 (2006).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1호, 159-181면.
- 이상원 (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90-128면.
- 이상원 (2006).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1-34면.
- 이상원·박윤규 (2007).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337-365면.
- 이성기·김학경 (2012).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0호 85-115면.
- 이창무 (2006).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349-376면.
- 임명순 (2003). 한국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호, 167-203면.
- 임명순 (2005). 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0호, 273-292면.
- 허경미·박영주 (2007).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529-560면.

2. 국외문헌

- Cunningham, W., Strauchs, C., Van Meter, C. (1990).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USA: Butterworth-Heinemann.
- Fisher, R. and Green, G. (1998). *Introduction to Security*, USA: Butterworth-Heinemann.
- Fisher, R., Halibozek, E., and Green, G. (2008) *Introduction to Security(Eight Edition)*, USA: Butterworth-Heinemann.
- McGinley, I. (2007). *Regulating "Rent-a-Cops" Post-9/11: Why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Fails to Address Homeland Security Concerns*, 6 Cardozo Pub. L. Pol'y & Ethics J. 129, 132.
- Purpura, P. (2011). *Security: An Introduction*, USA: CRC Press.
- Simonsen, C. (1998). *Private Security in America*, USA: Prentice Hall.

3. 기타

- 경찰청 (2012).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On-line]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 [검색일: 2012년 9월 23일].
- 연합뉴스 (2012). 치안의 민영화, 안전을 팝니다. [On-lin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80239>[검색일: 2012년 10월 7일].
- BSIS (2012a).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On-line]
<http://www.bsis.ca.gov/>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b). Request for Live Scan Service. [On-line]
http://www.bsis.ca.gov/forms_pubs/livescan/ppso.pdf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c). Information about Licensing. [On-line]
http://www.bsis.ca.gov/forms_pubs/licensingapp.pdf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d). Proprietary Private Security Officer Fact Sheet. [On-line]
http://www.bsis.ca.gov/forms_pubs/ppso_fact.shtml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e). Training Syllabus: Proprietary Private Security Officers. [On-line]
http://www.bsis.ca.gov/forms_pubs/train_syllabus.pdf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f). Frequently Asked Questions – Proprietary Private Security Employer. [On-line]
http://www.bsis.ca.gov/customer_service/faqs/ppse.shtml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g). Frequently Asked Questions – Security Guard(G). [On-line]
http://www.bsis.ca.gov/customer_service/faqs/security_guard.shtml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 BSIS (2012h). Alarm Company(Fact Sheet). [On-line]

http://www.bsis.ca.gov/forms_pubs/bsisarlm.pdf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Department of Justice (2006). Rules and Regulation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8 CFR Part 105, 2006 WL 46538(F.R.). [On-line]

<http://www.law.cornell.edu/cfr/text/28/105> [검색일: 2012년 9월 23일].

Strom, K., Berzofsky, M., Shook-Sa, B., Barrick, K., Daye, C., Horstmann, N., and Kinsey, S. (2010).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 Review of the Definitions, Available Data Sources, and Paths Moving Forward. [On-line]

<http://www.ncjrs.gov/pdffiles1/bjs/grants/232781.pdf> [검색일: 2012년 8월 23일].

【Abstract】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Lee, Seong-Ki
Kim, Hak-Kyo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orea. Due to its quasi-public service character, the industry also risks losing the public's favor if it is not quickly disciplined and brought under legitimate government regulation: the industry needs professional standards for conduct and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of security officers. This paper shares insight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a study of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hereinafter the PSOEAA) and the California system. According to the PSOEAA, aspiring security officers shall submit to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 check of the applicants' criminal records). Applicants' criminal records should include not only felony convictions but also any other moral turpitude offenses (involving dishonesty, false statement, and information on pending cases). The PSOEAA also allows businesses to do background checks of their employees every twelve months, enabling the employers to make sure that their employees remain qualified for their security

jobs during their employment. It also must be mentioned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ts private security sector, has established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a tacit recognit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s to be thoroughly, professionally, and actively managed by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American system provides a workable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implement a more stric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similar to that required by the PSOEEA. Second, it recommends that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be established to oversee and enforce regulation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be implemented to provide both diverse training as well as specialization and phasing.

Key words : US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Licensing Requirements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 Training Requirements of Private Security